



2024. 6. 5.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소요점검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Scorekeeping of the Bills Approved in 202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총괄 |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유미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김안나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 | **신헌태(총괄, 지출)**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수입)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지출) 추계세제분석관

추계 | **김효진** **윤주철** **태정림** **신헌태** **박인재**
문지은 **이주호** **남 희** **지수현** **우병혁**
김우림 **임슬기** **정혜승** **한예슬** **전수연**
이미연 **여은구** **임지원** **어수진** **강민지**
김효경 **박지원** **박성은** **장설희**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

지원 | **양희열** 행정실무원
유지원 자료분석연구원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4. 6.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4.5.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보고서에 포함된 비용추계의 일부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비용추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안의 가결 이후 변화된 정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발 간 사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입법의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의안비용추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원발의안과 위원회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전담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용추계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 통제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2023년 가결된 법률 920건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81건의 재정수반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추계가 가능한 185건의 재정수반법률에 따른 중기재정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연평균 7,918억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분은 연평균 10조 3,66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소요점검은 입법에 따른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원님의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차 례

요 약 / i

I. 서 론 / 1

-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1
-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4

II. 2023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 7

- 1. 개요 7
- 2.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10
-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14

III. 2023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23

- 1. 개요 23
- 2.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28
-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32
-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51

IV. 2023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61

- 1. 개요 61
- 2.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66
-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69
-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78

V. 결 론 / 87

[부록] 2023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표 / 91

표 차례

[표 1]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8
[표 2]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요인 현황	9
[표 3]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10
[표 4]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12
[표 5]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제안자별	15
[표 6]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위원회별	16
[표 7]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17
[표 8]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제안자별	19
[표 9]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위원회별	20
[표 10]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21
[표 11]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24
[표 12]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26
[표 13]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27
[표 14] 2023년 개정 조세수입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8
[표 15]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효과 등	29
[표 16]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중 지방세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30
[표 17]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법률별	33
[표 18]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	34
[표 19] 2023년 개정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6
[표 20] 2023년 개정 「법인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7
[표 21] 2023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8
[표 22] 202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1
[표 23] 2023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2
[표 24] 2023년 개정 「주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3
[표 25] 2023년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3
[표 26] 2023년 개정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45
[표 27] 2023년 개정 「지방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7

[표 28] 2023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9
[표 29] 2023년 개정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50
[표 30]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51
[표 31]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	53
[표 32] 2023년 개정 과세대상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4
[표 33] 2023년 개정 과세표준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5
[표 34] 2023년 개정 세율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6
[표 35] 2023년 개정 세액공제·감면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7
[표 36] 2023년 개정 기타 조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8
[표 37] 2023년 개정 국세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9
[표 38]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62
[표 39]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64
[표 40]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65
[표 41]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66
[표 42] 2023년 제·개정 신공항 건설 및 도로 정비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67
[표 43] 2023년 개정 영유아 지원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68
[표 44]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분야별	70
[표 45]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71
[표 46] 2023년 제·개정 사회복지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73
[표 47] 2023년 개정 보건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74
[표 48] 2023년 제·개정 농림수산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76
[표 49] 2023년 제·개정 교통 및 물류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77
[표 50]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성격별	78
[표 51]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성격별	79
[표 52] 2023년 개정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81
[표 53] 2023년 제·개정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86
[표 5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소요 ..	87

그림 차례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 4	
[그림 2] 2023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9	
[그림 3]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11	
[그림 4]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13	

요 약

- (재정소요점검 개요)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¹⁾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의미
 - 이때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은 전년 대비 변화(순액법)가 아닌 기준선 대비 변화(누적법)로 추계함
 - 법률안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 의안비용추계는 의안 발의단계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하는 ‘비용’(수입 순감 또는 지출 순증)을 추계
 -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변화’(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를 추계하므로,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을 포함
- (점검 필요성)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에 대한 분석과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의 수정 내용 및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추가재정소요의 점검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 (중기재정영향 분석) 가결 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년도에 국한해 분석하지 않고,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므로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한 수단

1) 기준선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전망한 것임

- (추가재정소요 정보 제공)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 의안비용추계는 법률안 입안단계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을 추계한다는 점에서 법률안이 상당 시간 경과 후 가결되거나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추계의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 변동, 법안의 수정, 예산안 확정 등의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추계 필요
 - 위원회대안에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²⁾에 따라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생략된 경우에도, 최종 가결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정보 제공 가능
 - 정부 제출 법률안의 비용추계서³⁾에 대한 재정소요도 파악 가능

□ (점검 대상)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920건⁴⁾ 중 재정수반법률은 281건이며, 이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185건의 법률을 재정소요점검의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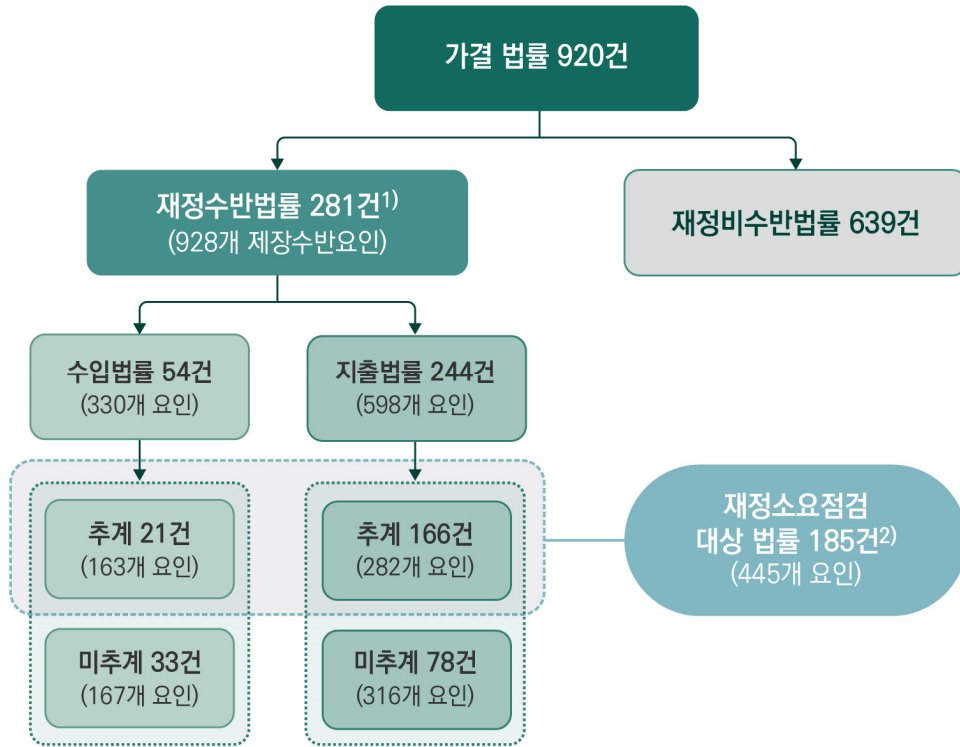
-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에 포함된 재정수반요인 928개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총 445개
 - 점검대상 수입법률은 21건으로 163개 재정수반요인
 - 점검대상 지출법률은 166건으로 282개 재정수반요인

2)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4) 2024년 1월 5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재의 결과 부결된 2건의 법률안 제외

[2023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7건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점검 결과)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9,880억원의 수입 감소와 11조 3,40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소요]

구분	수입	지출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제외	2조 1,962억원 감소	9,115억원 증가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포함	2조 9,880억원 감소	11조 3,401억원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적용기한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2조 9,88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수입법률별로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법인세법」 등에서 수입 증가가 예상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중 주요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효과 등 제외]

(단위: 개, 억원)

법률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 수입	국세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14	-76,973	-15,395
		부가가치세법	-	-	-
		농어촌특별세법	-	-	-
		법인세법	1	5,286	1,057
		기타 ¹⁾	18	-6,616	-1,323
	지방세 수입	지방세특례제한법	10	-7,474	-1,495
		지방세법	3	-24,027	-4,805
	소계		46	-109,803	-21,961
국세외 수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²⁾	3	-6	-1	
합 계			49	-109,809	-21,962

주: 1) 조세수입 기타에는 연평균 1,000억원 이하의 10개 수입법률을 포함

2) 국세외수입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수입법률을 포함

1. 추계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중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49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중 주요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총액기준]

(단위: 개, 억원)

법률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 수입	국세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62	-235,939	-47,188
		부가가치세법	2	-28,803	-5,761
		농어촌특별세법	1	315,376	63,075
		법인세법	1	5,286	1,057
		기타 ¹⁾	19	-7,978	-1,595
	지방세 수입	지방세특례제한법	71	-159,452	-31,890
		지방세법	4	-37,884	-7,577
	소계		160	-149,394	-29,879
국세외 수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²⁾		3	-6	-1
합 계			163	-149,400	-29,880

주: 1) 조세수입 기타에는 연평균 1,000억원 이하의 10개 수입법률을 포함

2) 국세외수입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 수입법률을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가결된 수입법률의 경우,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7,918억원으로 예년 대비 작은 규모로 예상⁵⁾되는데, 이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상쇄되는데 기인
 - 적용기한 연장 효과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2024~2028년간 연평균 7,918억원)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연평균 7조 993억원)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연평균 6조 3,075억원)가 복합적으로 작용

5)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당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는 2023~2027년간 연평균 3조 5,123억원 수준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효과 등]

(단위: 개, 억원, %)

법률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비중
합 계	163	-149,400	-29,880	100.0
조세수입	160	-149,394	-29,879	100.0
- 적용기한 연장 효과	114	-39,591	-7,918	26.5
· 조세지출 등 적용기한 연장효과 (세수감소효과)	113	-354,967	-70,993	-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효과 (세수증가효과)	1	315,376	63,075	-
- 그 외 세법개정 효과 ¹⁾	46	-109,803	-21,961	73.5
국세외수입	3	-6	-1	0.0

주: 1) 그 외 세법개정 효과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등 적용기한 연장 외의 세법개정 사항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의 의결이 2월과 12월에 각각 두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등 예년에 비해 지방세 관련 수입법률로 인한 세수효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⁶⁾

6) 2022년 가결된 지방세 관련 법률은 없었으며, 2021년의 경우 조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수반 요인 147개 중 지방세 관련 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56개로 37.6% 수준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중 지방세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개, 억원)

법률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수입 계	160 (46)	-149,394 (-109,803)	-29,879 (-21,961)
지방세 관련 법안 계(A+B)	75 (13)	-197,336 (-31,501)	-39,467 (-6,300)
2023년 2월 개정(A)	42 (6)	-52,955 (-30,044)	-10,591 (-6,008)
- 「지방세법」	3	-24,027	-4,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39 (3)	-28,928 (-6,017)	-5,786 (-1,203)
2023년 12월 개정(B)	33 (7)	-144,381 (-1,457)	-28,876 (-291)
- 「지방세법」	1 (0)	-13,857 (0)	-2,771 (0)
- 「지방세특례제한법」	32 (7)	-130,524 (-1,457)	-26,105 (-291)

주: 1) 지방세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의미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가결된 세법의 경우, 출산·양육 및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2023년 개정 조세관련 수입법률의 주요 목적별 개정사항]

특징	주요 개정사항
출산·자녀양육 지원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등
첨단기술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범위 및 공제를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고물가 대응	-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 생맥주 주세율 한시경감 적용기한 연장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수반요인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세수입 중 세액공제·감면과 세율 관련 개정으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관련 개정으로는 수입의 증가가 예상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단위: 개, 억원)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	추가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과세대상	13 (11)	316,216 (849)	63,243 (170)
과세표준	4	3,719	744
세율	7 (3)	-54,314 (-23,528)	-10,863 (-4,706)
세액공제·감면	130 (22)	-384,310 (-60,138)	-76,862 (-12,028)
기타	6	-30,705	-6,141
소계	160 (46)	-149,394 (-109,803)	-29,879 (-21,961)

주: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11조 3,40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지출 증가에서 보건 분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나, 연장 효과 제외 시는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농림수산 순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유효기간 연장 효과 등 제외]

(단위: 개, 억원, %)

지출분야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일반·지방행정	43	1,708	342	3.7
공공질서 및 안전	17	878	176	1.9
통일·외교	6	109	22	0.2
국방	6	612	122	1.3
교육	2	31	6	0.1
문화 및 관광	12	396	79	0.9
환경	8	1,997	399	4.4
사회복지	25	8,896	1,779	19.5
보건	15	3,255	651	7.1
농림수산	72	7,851	1,570	17.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	1,861	372	4.1
교통 및 물류	26	17,135	3,427	37.6
통신	9	436	87	1.0
국토 및 지역개발	8	400	80	0.9
과학기술	3	6	1	0.01
합 계	273	45,573	9,115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총액기준]

(단위: 개, 억원, %)

지출분야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일반·지방행정	44	2,238	448	0.4
공공질서 및 안전	17	878	176	0.2
통일·외교	6	109	22	0.02
국방	6	612	122	0.1
교육	2	31	6	0.01
문화 및 관광	12	396	79	0.1
환경	9	1,999	400	0.4
사회복지	25	8,896	1,779	1.6
보건	17	521,596	104,319	92.0
농림수산	73	8,011	1,602	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	4,121	824	0.7
교통 및 물류	26	17,135	3,427	3.0
통신	9	436	87	0.1
국토 및 지역개발	9	537	107	0.1
과학기술	3	6	1	0.001
합 계	282	567,003	113,401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성격별로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의무지출 증가 금액이 재량지출보다 큼
 - 다만,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 등을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재량지출 증가 금액이 의무지출보다 큼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성격별]

(단위: 개, 억원, %)

지출성격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의무지출	8 (5)	519,018 (147)	103,804 (29)	91.5
재량지출	274 (268)	47,984 (45,425)	9,597 (9,085)	8.5
합 계	282 (273)	567,003 (45,573)	113,401 (9,115)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전체 지출 변동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으로 연평균 10조 3,668억원(일반회계 8조 8,451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 5,218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의 연장은 의무지출 증가 효과로 이에 따른 지출 증가 효과의 크기는 점검대상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른 지출 변동의 91.4%를 차지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단위: 개, 억원, %)

지출성격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의무지출	8	519,018	103,804	91.5
-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효과	2	518,341	103,668	91.4
· 일반회계 (「국민건강보험법」)	1	442,253	88,451	78.0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1	76,088	15,218	13.4
- 그 외 지출 변동 효과	6	677	135	0.1
재량지출	274	47,984	9,597	8.5
합 계	282	567,003	113,401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가결된 지출법률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외에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출생아와 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 2023년 제·개정 신공항 건설 및 도로 정비 관련 지출법률에 따라 연평균 3,26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2023년 제·개정 신공항 건설 및 도로 정비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023.4.13.)	13,678	2,73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2023.10.6.)	1,802	360
도로법(2023.12.8.)	843	169
합 계	16,323	3,26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개정 출생아·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관련 지출법률에 따라 연평균 1,87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2023년 개정 영유아 지원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23.12.8.)	4,816	96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23.12.8.)	2,016	4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2.27.)	2,537	507
합 계	9,369	1,87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재정소요점검은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법의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정소요 발생의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에 따른 추계상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법령상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세입법률의 경우 미래의 지출 또는 수입이 예상 가능하여 재정추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임
- 반면에 재량지출,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지출,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인 수입의 경우에는 개연성이 있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추계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I. 서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 (정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¹⁾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²⁾을 의미
 - 이때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은 전년 대비 변화(순액법)가 아닌 기준선 대비 변화(누적법)로 추계함
 - 입법의 재정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안 발의단계에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의안비용추계³⁾와 유사하나,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⁴⁾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한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수반요인을 ‘재추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 (의안비용추계) 의안 발의단계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하는 비용, 즉 ‘수입 순감 또는 지출 순증’이 추계 대상⁵⁾

-
- 1) 기준선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전망한 것임
 - 2) 해당 사업이나 수입의 전체 금액(총 재정소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제·개정에 따라 추가로 변동이 발생하는 재정소요의 증감을 의미
 - 3)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4)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법률안이 아닌 ‘법률’로 표현. 본 보고서에서는 ‘법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되, 경우에 따라 법률안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
 - 5)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 (재정소요점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 등 재정환경 변화⁶⁾를 고려하여 '수입 또는 지출의 순증 및 순감'⁷⁾을 추계

□ (대상) 재정소요점검의 대상은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이며, 분석단위는 재정수반법률에 포함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법률'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야기하는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한 법률로서, 재정수반법률은 2개 이상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음
 - 제·개정된 재정수반법률은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거나, 여러 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인별로 추계 결과를 점검
- 재정소요점검 대상 재정수반법률의 범위에는 국회 의안심사과정을 거쳐 가결된 의원발의안·위원회대안·정부제출안⁸⁾ 등을 모두 포함
 - 법률안이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긴급한 사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위원회대안 등도 사후 재정소요점검의 대상⁹⁾
-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의 속성별(수입법률·지출법률)로 제안자, 소관위원회, 재정주체별로 제시되며, 수입법률에서는 수입법률별, 수입유형별, 지출법률은 지출분야별, 지출성격별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추가 제시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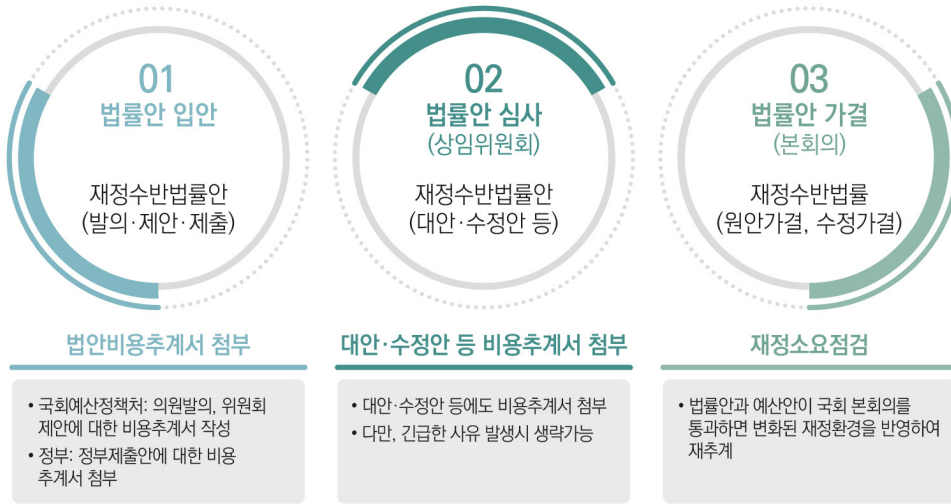
- 6) '재정환경 변화'는 의안발의 단계의 비용추계 시점과 달라진 거시경제지표 변화(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와 확정예산 등을 반영함
- 7) 즉, 재정소요점검은 의안비용추계와 달리 수입 순증과 지출 순감에 대해서도 모두 각각 추계함
- 8) 의안비용추계는 의원발의안과 위원회대안 등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제출안은 정부가 관련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안 가결 후 이뤄지는 재정소요점검은 의원발의안, 위원회대안 등은 물론 정부제출안으로 가결된 모든 재정수반 법률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함
- 9) 다만, 모든 재정수반법률의 예상 소요액을 추계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제·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재정사업 등이 구체화 되어야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수입법률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외수입 관련 수입법률 등으로 구분
-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은 조세수입의 경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감면, 기타 유형으로, 국세외수입의 경우 적용대상, 요율, 감면, 기타 유형으로 구분
- 지출분야는 일반·지방행정, 교육, 환경, 사회복지, 농림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구분
- 지출성격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

□ (시점)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법률이 가결된 이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시점에 실시

- 법률안이 가결된 이후 재정수반요인이 수정되거나 법률안 발의 단계에 구체화되지 않았던 사업계획 등이 법안 가결 후 수립되는 등의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
- 법률안 가결 이후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 제·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의 확정예산 등을 반영하여 재추계
 - 특히,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영향을 재추계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가.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 분석

- 재정소요점검은 가결 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는 법령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무지출과 국회 예산과정을 통해 통제되는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재정영향을 점검할 필요
 -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년도에 국한해 분석하지 않고,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므로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한 수단
 -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법률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추계액으로 재정수반법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차년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에 바로 반영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예산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가결 법률의 추가재정소요 정보 제공

□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 의안비용추계는 법률안 입안단계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을 추계한다는 점에서 법률안이 상당 시간 경과 후 가결되거나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추계의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 변동, 법안의 수정, 예산안 확정 등의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추계 필요
 - 법률안별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의안비용추계는 한 해 동안 가결된 법률안 전체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가결 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 위원회대안에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¹⁰⁾에 따라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생략된 경우에도, 최종 가결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정보 제공 가능
- 정부 제출 법률안의 비용추계서¹¹⁾에 대한 재정소요도 파악 가능

10)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1)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Box1] 미국의 스코어키퍼(Scorekeeping)와 예산과정에서의 역할

- 미국 연방예산과정에서 스코어키퍼(Scorekeeping)은 계류 중인 재정수반법률안과 현행 법률에 따른 예산상의 영향—연방 세출, 세입 및 적자규모—을 점검하는 장치¹²⁾
 - 스코어키퍼를 통해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예산결의안에서 정한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재량지출), PAYGO¹³⁾ 준칙(의무지출, 세입)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미국 의회는 거시재정계획으로서 예산 총계, 세출의 기능별 배분, 예산조정지침으로 구성된 ‘예산결의안’을 작성하는데, 예산결의안이 확정된 이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재정수반법률안은 예산결의안의 한도 수준과 예산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상 이의를 제기(point of order)하여, 해당 법안의 심사를 중지하거나 수정하도록 할 수 있음¹⁴⁾
 - 예산심사가 종료된 후 집행한도를 넘는 지출이 결정되면 OMB(관리예산처,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스코어키퍼를 통해 해당 재정소요에 대한 일괄삭감조치(sequestration)도 취할 수 있음
- 의회 예산위원회는 CBO(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스코어카드(Scorecard)를 확인하는 스코어키퍼(Scorekeeping)을 총괄

12) CBO. “CBO Explains Budgetary Scorekeeping Guidelines,” 2021. 1.

13) PAYGO(Pay-As-You-Go)는 2010년 법률로 전환되어, 의무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입을 감소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경우, 세입증가나 다른 지출을 감소하도록 하여 재정수지에 영향을 상쇄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삭감(Sequestration)하여 재정수지에 영향이 없도록 한 제도

14) 국회예산정책처, 「미국의회예산처: 의회예산과정과 CBO의 역할」, 2012.

II. 2023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1. 개요

- 2023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 920건¹⁵⁾ 중 재정수반법률은 281건¹⁶⁾
 - (수입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54건
 - 수입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54건으로 19.2%를 차지
 - (지출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244건
 - 지출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244건으로 86.8%를 차지
-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수입법률 21건, 지출법률 166건 등 총 185건의 법률이 재정소요점검 대상인 법률

15) 2024년 1월 5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재의 결과 부결된 2건의 법률안 제외

16)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7건 포함

[표 1]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단위: 건, %)

재정수반법률	수입법률	지출법률	합계
법률 (비중)	54 (19.2)	244 (86.8)	281 ¹⁾ (100.0)
추계	21	166	185 ²⁾
미추계	33	78	96 ³⁾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7건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

3)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5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에는 928개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185건의 재정수반법률의 445개 재정수반요인을 추계

-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928개로 281건의 가결 법률 1건당 평균 3.3개 요인을 포함
 - (수입법률) 2023년 가결된 수입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330개로 54건의 수입법률 1건당 평균 6.1개
 - (지출법률) 2023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598개로 244건의 지출법률 1건당 평균 2.5개
 - 수입법률의 경우 법률 1건당 재정수반요인이 지출법률보다 3.6개 더 많은데, 이는 수입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법에 다수의 재정수반요인들이 포함되기 때문¹⁷⁾
- 추계한 재정수반요인은 445개로 수입법률의 경우 163개, 지출법률의 경우는 282개

17) 일례로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2023. 12. 21. 의결)의 경우 103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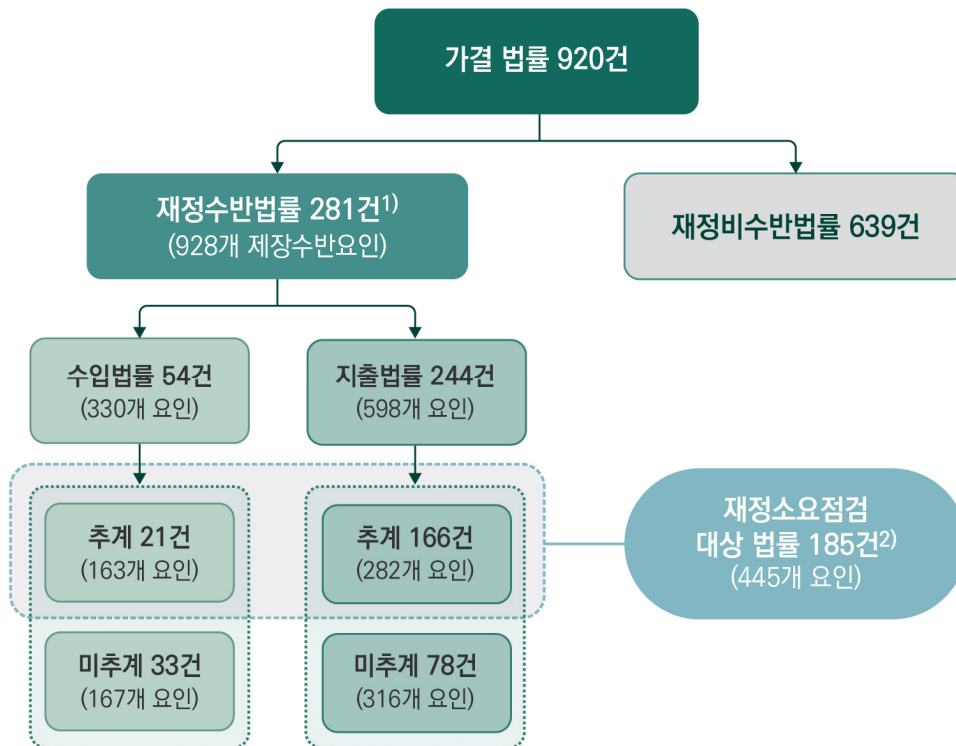
[표 2]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요인 현황

(단위: 개, %)

재정수반요인	수입법률	지출법률	합계
요인 (비중)	330 (35.6)	598 (64.4)	928 (100.0)
추계	163	282	445
미추계	167	316	4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2] 2023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7건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 (제안자별)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제안자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반법률 281건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163건(58.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107건(38.1%), 정부 11건(3.9%) 순
- 가결 법률 920건을 제안자별로 보면, 의원이 455건(4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위원회 414건(45.0%), 정부 51건(5.5%) 순
- 점검대상인 재정수반요인 445개는 제안자별로 위원회 337개(75.7%), 의원 94개(21.1%), 정부 14개(3.1%) 순

※ 단,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법안에 포함된 재정수반요인은 최초 정부 제출안 및 의원 발의안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임

[표 3]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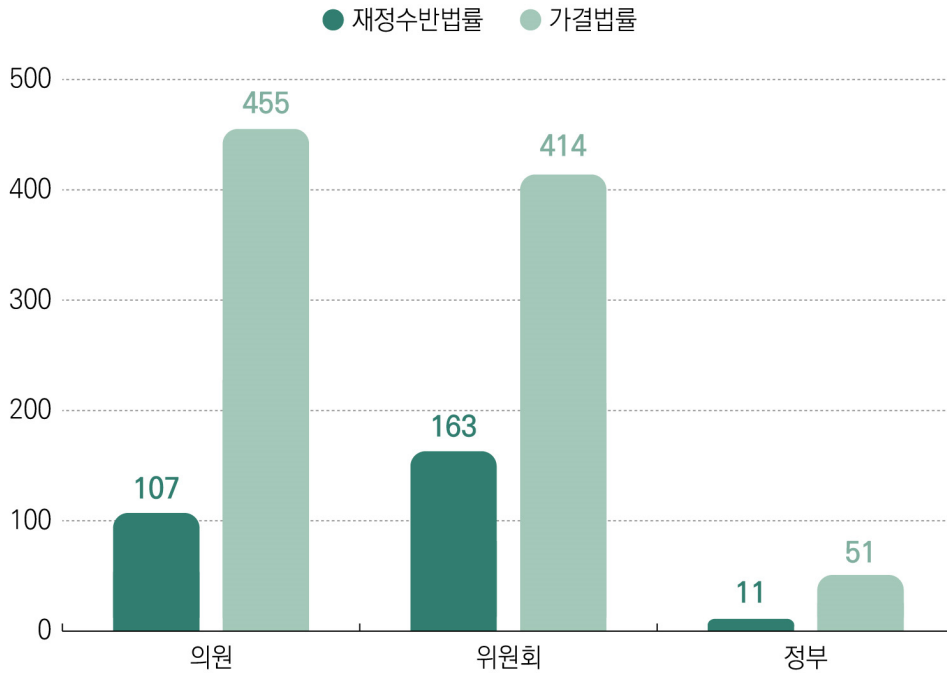
(단위: 건, 개, %)

제안자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의원 (구성비)	455 (49.5)	107 (38.1)	66 (35.7)	173 (18.6)	94 (21.1)
위원회 (구성비)	414 (45.0)	163 (58.0)	111 (60.0)	720 (77.6)	337 (75.7)
정부 (구성비)	51 (5.5)	11 (3.9)	8 (4.3)	35 (3.8)	14 (3.1)
합 계	920 (100.0)	281 (100.0)	185 (100.0)	928 (100.0)	445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3]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단위: 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위원회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반법률 281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3건, 보건복지위원회가 41건, 국토교통위원회 40건, 행정안전위원회 3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건 순
 - 가결 법률 920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160건, 국토교통위원회 12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6건, 행정안전위원회 74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4건 순
- 점검대상인 재정수반요인 445개는 행정안전위원회 106개, 기획재정위원회 88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0개, 국토교통위원회 32개, 보건복지위원회 30개 순

[표 4]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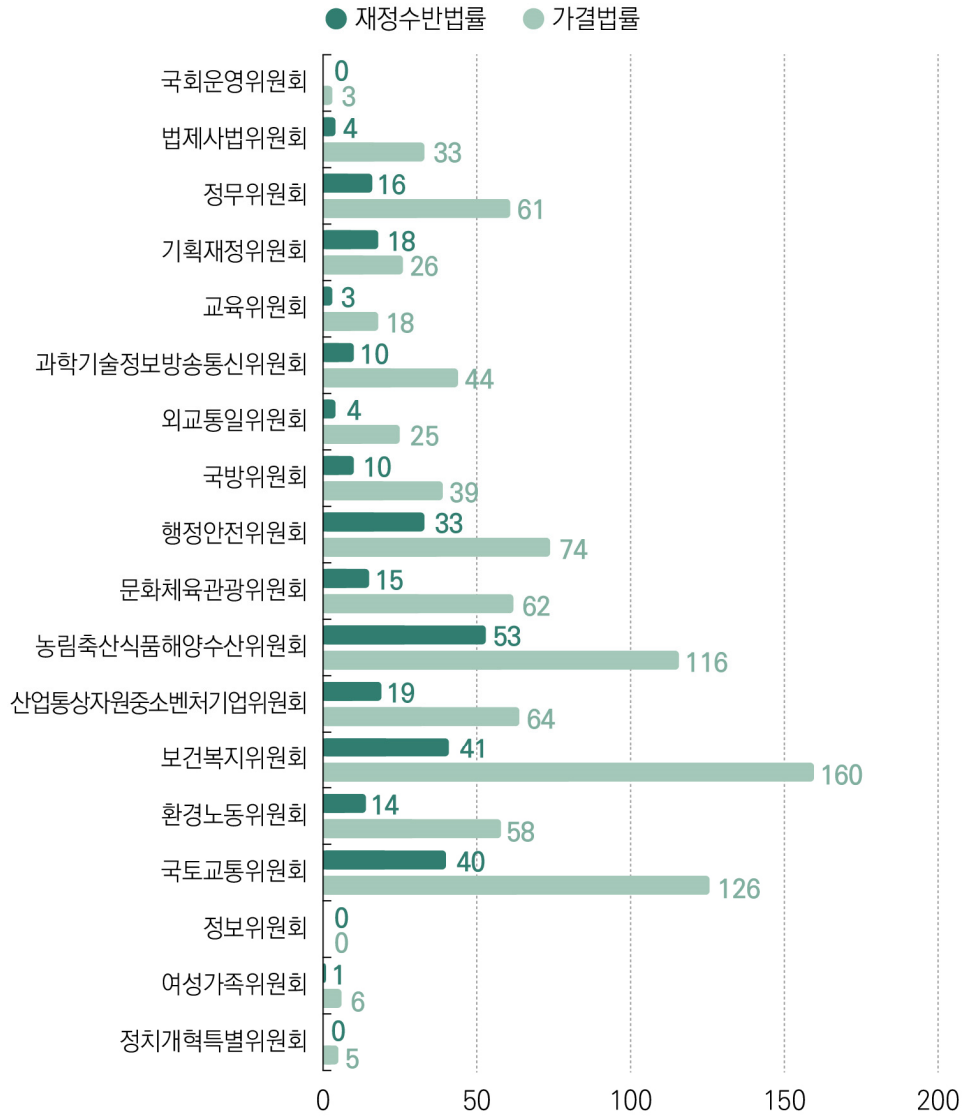
(단위: 건, 개)

위원회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국회운영위원회	3	0	0	0	0
법제사법위원회	33	4	4	6	6
정무위원회	61	16	15	26	23
기획재정위원회	26	18	16	177	88
교육위원회	18	3	2	14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4	10	4	55	13
외교통일위원회	25	4	3	17	6
국방위원회	39	10	7	15	7
행정안전위원회	74	33	20	203	1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2	15	9	29	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6	53	39	144	8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4	19	11	76	24
보건복지위원회	160	41	25	53	30
환경노동위원회	58	14	11	21	15
국토교통위원회	126	40	19	91	32
정보위원회	-	-	-	-	-
여성가족위원회	6	1	0	1	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0	0	0	0
합 계	920	281	185	928	4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4] 2023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가. 수입법률

-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수입법률은 54건으로 330개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추계가 가능한 21건 법률,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바탕으로 재정소요점검을 시행
- (제안자별) 2023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제안자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수입법률 21건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15건(7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 4건(19.0%), 의원 2건(9.5%) 순
 - 수입법률 54건을 제안자별로 보면, 위원회가 32건(5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16건(29.6%), 정부 6건(11.1%) 순
 - ※ 단,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법안에 포함된 재정수반요인은 최초 정부 제출안 및 의원 발의안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임
 - 점검대상인 재정수반요인 163개는 제안자별로 위원회 156개(95.7%), 정부 5개(3.1%), 의원 2개(1.2%) 순

[표 5]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제안자별

(단위: 건, 개, %)

제안자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의원 (구성비)	16 (29.6)	2 (9.5)	17 (5.2)	2 (1.2)
위원회 (구성비)	32 (59.3)	15 (71.4)	303 (91.8)	156 (95.7)
정부 (구성비)	6 (11.1)	4 (19.0)	10 (3.0)	5 (3.1)
합 계	54 (100.0)	21 (100.0)	330 (100.0)	163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2023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위원회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수입법률 21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14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건 순
 - 수입법률 54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7건, 국토교통위원회 1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건 순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163개는 기획재정위원회 85개, 행정안전위원회 75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개 순

[표 6]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개)

위원회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	-	-	-
정무위원회	-	-	-	-
기획재정위원회	17	14	166	85
교육위원회	-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
외교통일위원회	1	0	6	0
국방위원회	1	0	1	0
행정안전위원회	6	4	124	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	2	12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1	3	1
보건복지위원회	1	0	1	0
환경노동위원회	-	-	-	-
국토교통위원회	15	0	17	0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
합 계	54	21	330	1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2023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수입법률 21건¹⁸⁾을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17건(81.0%), 지방자치단체가 7건(33.3%)을 차지
 - 수입법률 54건¹⁹⁾을 재정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40건(74.1%), 지방자치단체가 22건(40.7%)을 차지
- 점검대상인 재정수반요인 163개²⁰⁾는 국가가 88개(54.0%), 지방자치단체가 89개(54.6%)

[표 7]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단위: 건, 개, %)

재정주체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¹⁾	점검대상 ²⁾	전체 ³⁾	점검대상 ⁴⁾
국가 (구성비)	40 (74.1)	17 (81.0)	194 (58.8)	88 (54.0)
지방자치단체 (구성비)	22 (40.7)	7 (33.3)	155 (47.0)	89 (54.6)
합 계	54 (100.0) ⁵⁾	21 (100.0) ⁵⁾	330 (100.0) ⁵⁾	163 (100.0) ⁵⁾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8건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법률 3건 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재정수반요인 19개 포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14개 포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및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건수 및 개수, 비중의 합은 합계를 초과하나 합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100.0%로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법률 3건 포함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8건 포함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14개 포함

나. 지출법률

-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지출법률은 244건으로 598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추계가 가능한 166건 법률,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바탕으로 재정소요점검을 시행
- (제안자별) 2023년 가결된 지출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제안자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지출법률 166건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97건(5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65건(39.2%), 정부 4건(2.4%) 순
 - 지출법률 244건을 제안자별로 보면, 위원회가 140건(5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97건(39.8%), 정부 7건(2.9%) 순
 - ※ 단,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법안에 포함된 재정수반요인은 최초 정부 제출안 및 의원 발의안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임
 - 점검대상인 재정수반요인 282개는 제안자별로 위원회 181개(64.2%), 의원 92개(32.6%), 정부 9개(3.2%) 등

[표 8]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제안자별

(단위: 건, 개, %)

제안자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의원 (구성비)	97 (39.8)	65 (39.2)	156 (26.1)	92 (32.6)
위원회 (구성비)	140 (57.4)	97 (58.4)	417 (69.7)	181 (64.2)
정부 (구성비)	7 (2.9)	4 (2.4)	25 (4.2)	9 (3.2)
합 계	244 (100.0)	166 (100.0)	598 (100.0)	282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2023년 가결된 지출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위원회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지출법률 166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8건, 보건복지위원회 25건, 국토교통위원회 19건, 행정안전위원회 16건, 정부위원회 15건, 환경노동위원회 11건 순
 - 지출법률 244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0건, 보건복지위원회 41건, 국토교통위원회 29건, 행정안전위원회 2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건, 정부위원회 16건 순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282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8개, 국토교통위원회 32개, 행정안전위원회 31개, 보건복지위원회 30개, 정부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23개 순

[표 9]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개)

위원회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4	4	6	6
정무위원회	16	15	26	23
기획재정위원회	3	3	11	3
교육위원회	3	2	14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	4	55	13
외교통일위원회	4	3	11	6
국방위원회	10	7	14	7
행정안전위원회	27	16	79	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5	9	29	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0	38	132	7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	10	73	23
보건복지위원회	41	25	52	30
환경노동위원회	14	11	21	15
국토교통위원회	29	19	74	32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1	0	1	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	-	-	-
합 계	244	166	598	2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2023년 가결된 지출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지출법률 166건²¹⁾을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162건(97.6%), 지방자치단체가 25건(15.1%)을 차지
 - 지출법률 244건²²⁾을 재정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233건(95.5%), 지방자치단체가 51건(20.9%)을 차지
- 점검대상인 재정수반요인 282개²³⁾는 국가가 263개(93.3%), 지방자치단체가 39개(13.8%)

[표 10]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단위: 건, 개, %)

재정주체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¹⁾	점검대상 ²⁾	전체 ³⁾	점검대상 ⁴⁾
국가 (구성비)	233 (95.5)	162 (97.6)	540 (90.3)	263 (93.3)
지방자치단체 (구성비)	51 (20.9)	25 (15.1)	106 (17.7)	39 (13.8)
합 계	244 (100.0) ⁵⁾	166 (100.0) ⁵⁾	598 (100.0) ⁵⁾	282 (100.0) ⁵⁾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40건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법률 21건 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재정수반요인 48개 포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20개 포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및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건수 및 개수, 비중의 합은 합계를 초과하나 합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100.0%로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법률 21건 포함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40건 포함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20개 포함

III. 2023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수입법률은 54건(재정수반요인은 330개)으로 이 중 추계가 가능한 법률 21건(재정수반요인 163개)에 대해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²⁴⁾ 2조 9,88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동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른 수입 변동 규모에는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포함하고 있음
 -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 농어촌특별세 연장 효과: 연평균 6조 3,075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
 - 조세지출 등 연장 효과: 연평균 7조 993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이하에서는 추계가 가능한 21건 법률의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제안자·위원회·재정주체별로 구분하여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서술
- (제안자별) 추계가 가능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금액은 위원회 제안²⁵⁾, 정부 제출, 의원 발의 순
 - 위원회가 제안한 수입법률의 156개 재정수반요인(국가전략기술 투자세

24) 이하 연평균 값은 법률 제·개정에 따라 2024~2028년까지 예상되는 수입 변동의 총액을 5년으로 나눈 값으로, 예를 들어, 법률이 2025년 이후 시행되거나 법률의 효력이 2027년 이전에 종료되어 수입 변동이 1~4년간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25) 단, 위원회에서 제안된 대안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의원 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 등 원안을 폐기하고 대신 원안의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제출된 법안임

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685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위원회 제안 수입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3,04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정부가 제출한 수입법률의 5개 재정수반요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15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정부 제출 수입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88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

○ 의원이 발의한 수입법률의 2개 재정수반요인(국유림 대부료 연체료율 조정,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범위 확대)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표 11]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단위: 개, 억원)

제안자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위원회	156 (43)	-153,427 (-115,198)	-30,685 (-23,040)
정부	5 (4)	4,077 (5,439)	815 (1,088)
의원	2	-49	-10
합 계	163 (49)	-149,400 (-109,809)	-29,880 (-21,962)

주: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추계가 가능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금액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일부 존재

- 이는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세수입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세는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데 기인
 - 2022년 등 예년에는 국세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금액 비중이 지방세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중을 상회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 지방세 관련 법안이 2월과 12월 두 차례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중이 기획재정위원회를 상회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수입법률의 75개 재정수반요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9,467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2023년 2월 가결된 2023년 시행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591억원 수입 감소가 예상
 - ※ 2023년 수입 감소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 2023년 12월 가결된 2024년 시행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8,876억원 수입 감소가 예상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수입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30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수입법률의 85개 재정수반요인(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597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수입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5,652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 농어촌특별세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효과(연평균 6조 3,075억원) 및 조세지출 등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연평균 3조 7,826억원) 포함
- 그 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으로 연평균 1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표 12]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단위: 개, 억원)

위원회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행정안전위원회	75 (13)	-197,336 (-31,501)	-39,467 (-6,300)
기획재정위원회	85 (33)	47,987 (-78,258)	9,597 (-15,65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49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0.1	-0.02
합 계	163 (49)	-149,400 (-109,809)	-29,880 (-21,962)

주: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가 재정주체인 수입법률의 88개 재정수반요인(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1조 4,367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국가가 재정주체인 수입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5,482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 농어촌특별세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효과(연평균 6조 3,075억원) 및 조세지출 등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연평균 3조 3,226억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주체인 수입법률의 89개 재정수반요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4조 4,247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주체인 수입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479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표 13]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단위: 개, 억원)

재정주체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국가	88 (36)	71,834 (-77,412)	14,367 (-15,482)
지방자치단체	89 (15)	-221,233 (-32,397)	-44,247 (-6,479)
합 계	163 ¹⁾ (49) ²⁾	-149,400 (-109,809)	-29,880 (-21,962)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14개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2개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로 인하여 상쇄

-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요인을 살펴보면, 현행 법률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7,918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관련 연평균 금액 기준 상위 10개 재정수반요인이 모두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사항

[표 14] 2023년 개정 조세수입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개,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1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315,376	63,075
2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적용기한 연장	-117,792	-23,558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1,631	-8,326
4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1,068	-8,214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9,266	-3,853
6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	-13,857	-2,771
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3,268	-2,654
8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9,900	-1,980
9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7,017	-1,403
10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218	-1,044

주: 추계가 가능한 조세수입 관련 재정수반요인 중 금액 기준 상위 10개 요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의 총계는 예년 대비 작은 규모로 집계²⁶⁾되나, 이는 조세지출 등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연

26)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당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3조 5,123억원 수준으로 집계

평균 7조 993억원)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연평균 6조 3,075억원)로 상쇄된 결과

[표 15] 2023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효과 등

(단위: 개, 억원, %)

법률	추가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비중
조세수입	160	-149,394	-29,879	100.0
- 적용기한 연장 효과	114	-39,591	-7,918	26.5
· 조세지출 등 적용기한 연장효과 (세수감소효과)	113	-354,967	-70,993	-
· 농어촌특별세 연장효과 (세수증가효과)	1	315,376	63,075	-
- 그 외 세법개정 효과	46	-109,803	-21,961	73.5
국세외수입	3	-6	-1	0.0
합 계	163	-149,400	-29,880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방세 관련 수입법률의 높은 비중

- 2023년의 경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의 의결이 2월과 12월에 각각 두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등 예년에 비해 지방세 관련 수입법률로 인한 세수효과가 크게 나타남
 - 2023년 시행 지방세 관련 법률이 2023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2022년 개정 수입법률에는 지방세 관련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2023년 개정 수입법률에는 지방세 관련 법안의 재정수반요인 비중이 크게 나타남
 - ※ 2023년 가결된 조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수반요인(160개) 중 지방세 관련 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75개로 46.9% 수준²⁷⁾
 - 지방세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9,467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 2023년 2월에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률로 연평균 1조 591억원, 12월에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률로 연평균 2조 8,876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27) 2022년 가결된 지방세 관련 법률은 없었으며, 2021년의 경우 조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수반요인 147개 중 지방세 관련 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56개로 37.6% 수준

[표 16]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중 지방세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개, 억원)

법률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수입 계	160 (46)	-149,394 (-109,803)	-29,879 (-21,961)
지방세 관련 법안 계(A+B)	75 (13)	-197,336 (-31,501)	-39,467 (-6,300)
2023년 2월 개정(A)	42 (6)	-52,955 (-30,044)	-10,591 (-6,008)
- 「지방세법」	3	-24,027	-4,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39 (3)	-28,928 (-6,017)	-5,786 (-1,203)
2023년 12월 개정(B)	33 (7)	-144,381 (-1,457)	-28,876 (-291)
- 「지방세법」	1 (0)	-13,857 (0)	-2,771 (0)
- 「지방세특례제한법」	32 (7)	-130,524 (-1,457)	-26,105 (-291)

주: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출산·자녀양육과 첨단기술에 대한 기업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출산·자녀양육)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 「소득세법」 개정(2023.12.21. 의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2023.12.21.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3.12.21. 의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3.12.20. 의결)
 - (소득세법)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 8세 이상 손자녀 추가 및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15만원 →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10만원 → 2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또는 출산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을 경우 자녀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 한도로 추가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완화(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 한도를 상향 조정(80만원 → 100만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 신설
-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범위 및 공제율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3.3.30. 및 12.21. 의결)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및 법인세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확대(15% → 25%), 2023년 귀속분에 대하여 기술별로 차등적으로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을 상향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소상공인 지원 및 고물가 대응)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맥주 주세율 한시경감 적용기한 연장 등
 - 「부가가치세법」 개정(2023.12.21. 의결), 「주세법」 개정(2023.12.21. 의결)
 -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8/108 → 9/109)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 (주세법) 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의 80% 수준으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3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법률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수입법률 21건 중 조세수입과 관련된 법률은 19건(국세수입 15건, 지방세수입 4건), 국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률은 3건으로 나타남
 - 「관세법」의 경우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과태료)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 포함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163개 중 조세수입과 관련된 요인은 160개(국세수입 85건, 지방세수입 75건), 국세외수입과 관련된 요인은 3개로 나타남
 - 국세수입과 관련된 요인은 「조세특례제한법」 62개, 「소득세법」 9개 등 분포
 - 지방세수입과 관련된 요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71개, 「지방세법」 4개 등 분포
 - 국세외수입 관련된 요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표법」, 「관세법」에 각각 1개씩 분포

[표 17]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법률별

(단위: 건, 개)

법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조세 수입	국세 수입	국세기본법	1	1	3	1
		국세징수법	1	1	4	1
		소득세법	1	1	18	9
		법인세법	1	1	3	1
		부가가치세법	1	1	4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1	3	1
		인지세법	1	1	1	1
		관세법	1	1	6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	1	3	1
		교육세법	1	1	2	2
		주세법	1	1	2	1
		농어촌특별세법	1	1	1	1
		조세특례제한법	2	2	97	62
		수산자원관리법	1	1	1	1
	지방세 수입	지방세법	2	2	27	4
		지방세특례제한법	3	2	96	71
	기타 ¹⁾		6	0	22	0
	소계		26	19	293	160
국세외수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1	1	1
		관세법	1	1	1	1
		상표법	1	1	1	1
		기타 ¹⁾	28	0	34	0
		소계	31	3	37	3
합 계			54 ²⁾	21 ²⁾	330	163

주: 1) 기타에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추계가 불가능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을 포함

2) 조세수입과 국세외수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법률(「관세법」 등)이 존재하여 조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의 재정수반법률 개수의 합과 전체 재정수반법률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재정수입 감소의 대부분은 조세수입에서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조세수입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9,880억원 수입감소가 예상

[표 18]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

(단위: 개, 억원)

법률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 수입	국세 수입	소득세법	9	-3,096	-619
		법인세법	1	5,286	1,057
		부가가치세법	2 (0)	-28,803 (0)	-5,761 (0)
		조세특례제한법	62 (14)	-235,939 (-76,973)	-47,188 (-15,3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3,528	-706
		주세법	1 (0)	-1,362 (0)	-272 (0)
		농어촌특별세법	1 (0)	315,376 (0)	63,075 (0)
		기타 ¹⁾	8	8	2
	지방세 수입	지방세법	4 (3)	-37,884 (-24,027)	-7,577 (-4,805)
		지방세특례제한법	71 (10)	-159,452 (-7,474)	-31,890 (-1,495)
	소계		160 (46)	-149,394 (-109,803)	-29,879 (-21,961)
국세외 수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5	-1
	관세법		1	-1	-0.2
	상표법		1	-0.1	-0.02
	소계		3	-6	-1
합 계			163 (49)	-149,400 (-109,809)	-29,880 (-21,962)

주: 1) 조세수입 기타에는 합계금액 1,000억원 이하의 7개 수입법률을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조세수입

(가) 소득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소득세법」의 주요 재정수반 요인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이상 세수감소 요인), 배당가산을 하향 조정(이상 세수증가 요인) 등 9건²⁸⁾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상향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자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적용되는 추가 공제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 자녀별 공제액: 첫째 15만원, 둘째 30만원 → 35만원, 셋째 이후 30만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대상 주택가액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
 - 공제대상 주택(분양권 포함)가액 기준 상향조정: 5억원 → 6억원
 - 공제한도 상향조정: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 배당가산을 하향 조정: 배당소득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공제분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하향 조정
 -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주주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하향 조정
 - ※ '23년 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과표 구간의 세율 인하(10% → 9%)

28) 이하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일을 표시하지 않고,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일을 표시

에 따른 조정

□ (재정소요점검 결과) 「소득세법」(2023.12.21.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19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평균 777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연평균 450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평균 149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배당가산율 하향 조정: 연평균 906억원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

[표 19] 2023년 개정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소득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3.12.21.)	자녀세액공제 확대	-3,885	-777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2,249	-45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744	-149
	배당가산율 하향 조정	4,532	906
	기타 ¹⁾	-750	-150
합 계		-3,906	-619

주: 1) 2024년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30% → 40%) 등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법인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법인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1건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

지 않은 다음의 배당소득을 수입배당금 익금산입

- 자본의 감소로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
-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따른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 재평가적립금: 법인의 합병·분할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중 승계된 금액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법인세법」(2023.12.21.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57억원의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

[표 20] 2023년 개정 「법인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법인세법」 (정부, 2023.12.2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5,286	1,057
합 계		5,286	1,057

주: 단순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부가가치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부가가치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건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및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 세액공제 한도: 500만원 → 1,000만원
- 공제율: 결제금액의 1% → 1.3%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과세 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 공제율: 8/108 → 9/109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재정소요점검 결과) 「부가가치세법」(2023.12.21.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761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조세 수입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4,989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771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표 21] 2023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3.12.2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24,946	-4,989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3,857	-771
합 계		-28,803 (0) ¹⁾	-5,761 (0) ¹⁾

주: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조세특례제한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재정

수반요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농림어업용 석유류 면제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62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농지 소재지 거주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 단,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소재지 거주자도 해당

- 감면율: 100%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농림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등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2023년 4월 시행)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중소기업) 16% → 25%, (중견기업 및 대기업) 8% → 15%
- 2023년 과세연도에 한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 %) 일반기술 1/5/10 → 3/7/12

신성장·원천기술 3/6/12 → 6/10/18

(추가공제율,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국가전략기술 4 → 10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 한도를 상향 조정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지급액 한도: 80만원 → 10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 감면율: 취업 후 3년간 70%
 - ※ 단,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90%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 감면율: 10~40%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2023.3.30. 및 12.21.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7,188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 단,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5,395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8,326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8,214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연평균 7,624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연평균 5,394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3,853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2,654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표 22] 202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위원장, 2023.3.30.)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38,122	-7,6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2,294	-459
	소계	-40,416	-8,083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위원장, 2023.12.2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41,631	-8,326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1,068	-8,214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26,972	-5,39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19,266	-3,85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3,268	-2,654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9,900	-1,9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7,017	-1,40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6,278	-1,256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5,516	-1,103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3,395	-679
	기타 ¹⁾	-21,212	-4,243
	소계	-195,523	-39,105
합 계		-235,939 (-76,973)	-47,188 (-15,395)

주: 1)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 등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 확대 1건
 -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 5년 → 15년
- (재정소요점검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21.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06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표 23] 2023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3.12.21.)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 확대	-3,528	-706
합 계		-3,528	-706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주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주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생맥주 주세율 한시경감 적용기한 연장 1건
 - 생맥주 주세율 한시경감 적용기한 연장: 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의 80% 수준으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재정소요점검 결과) 「주세법」(2023.12.21.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72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 단, 단순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표 24] 2023년 개정 「주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주세법」 (정부, 2023.12.21.)	생맥주 주세율 한시경감 적용기한 연장	-1,362	-272
합 계		-1,362 (0)	-272 (0)

주: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농어촌특별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농어촌특별세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10년 연장 1건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2034년 6월까지 10년 연장

- 적용기한: 2024.6.30. → 2034.6.30.

□ (재정소요점검 결과) 「농어촌특별세법」(2023.12.21.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3,075억원의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조세 수입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표 25] 2023년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2023.12.21.)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315,376 ¹⁾	63,075 ¹⁾
합 계		315,376 (0)	63,075 (0)

주: 1)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으로 인한 세수효과 중 2028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효과만 포함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 기타 국세 관련 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교육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대상 확대, 관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에 한도 적용 등 8건
 -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대상 확대: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조합 제외)을 교육세 납세의무대상으로 추가
 - 관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현행 1년 이내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경감률을 10~20%에서 20~30%로 확대
 - 신고기간별 가산세 경감률: (6개월~1년) 10% → 20%,
(6개월 이내) 20% → 30%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에 한도 적용: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 추가
 - 가산세 한도: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1억원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교육세법」(2023.12.21.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1억원의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관세법」(2023.12.21.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2억원, 「국세기본법」(2023.12.21. 의결) 개정으로 연평균 7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교육세 납세의무대상 확대: 연평균 31억원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
 - 관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연평균 12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에 한도 적용: 연평균 7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표 26] 2023년 개정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교육세법」 (정부, 2023.12.21.)	교육세 납세의무대상 확대	153	31
「관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3.12.21.)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60	-12
「수산자원관리법」 (여기구 의원 등, 2023.10.6.)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범위 확대	-45	-9
「국세기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3.12.21.)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에 한도 적용	-35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위원장, 2023.12.21.)	FTA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사유 명확화	-5	-1
「국세징수법」 (기획재정위원장, 2023.12.21.)	공매 매각결정기일 1회 한정 연기 허용	0 ¹⁾	0 ¹⁾
「인지세법」 (정부, 2023.12.21.)	전자조달시스템상 인지세 납부기한 조정	0 ²⁾	0 ²⁾
합 계		8	2

주: 1)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타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를 허용함에 따라, 2024년 13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동 금액이 2025년에 이월되면서 상쇄될 것으로 예상

2) 「인지세법」 개정으로 전자조달시스템상 인지세 납부기한이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과세문서 작성일로 변경되면서, 2024년 32억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동 금액이 2025년에 감소하면서 상쇄될 것으로 예상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 지방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지방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이상 세수감소 요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이상 세수증가 요인) 등 4건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2023년 납세분부터 적용)²⁹⁾: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씩 인하
 - 법인지방소득세율(과표 ~2억원/2~200억원/200~3,000억원/3,000억원~, %): 1/2/2.2/2.5 → 0.9/1.9/2.1/2.4
 - ※ 2022년 「법인세법」 개정(법인세율 과표구간별 1%p 인하) 연계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2023년 납세분부터 적용): 개인지방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범위 확대
 - 과표구간: (최하위 구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차하위 구간) 1,200~4,600만원 → 1,400~5,000만원
 - ※ 2022년 「소득세법」 개정(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계사항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 1세대 1주택자 소유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 까지 3년 연장
 - 주택분 재산세율(과표 ~0.6억원/0.6~1.5억원/1.5~3억원/3억원~, %): 일반 0.1/0.15/0.25/0.4 → 특례 0.05/0.1/0.2/0.35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29) 2023년 시행 「지방세법」은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국회 본회의 의결(2.27.) 및 공포(3.14.)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과 별개로 시행일을 따로 규정함

□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세법」(2023.2.27. 및 12.20.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577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805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연평균 3,132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평균 2,863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2,771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연평균 807억원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

[표 27] 2023년 개정 「지방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지방세법」 (행정안전위원장, 2023.2.27.)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15,660	-3,13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4,317	-2,86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2025.1.1. 시행)	4,033	807
	소계	-24,027	-4,805
「지방세법」 (행정안전위원장, 2023.12.20.)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	-13,857	-2,771
	소계	-13,857	-2,771
합 계		-37,884 (-24,027)	-7,577 (-4,805)

주: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차) 지방세특례제한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71건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감면하는 조항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 적용기한: 2023.12.31. → 2026.12.31.
 -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2022.6.21. 이후 취득분에 소급 적용)³⁰⁾: 감면요건 완화,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요건 완화: 소득 기준 삭제 및 주택 취득가액 기준 상향
 - ※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삭제
 - (주택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역무관 12억원 이하
 - 감면율 조정: 주택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100%, 1.5억원 초과 50% → 100%
 - ※ 감면액 200만원 한도 규정 신설
 - 적용기한: 2023.12.31. → 2025.12.31.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23년 시행):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23.2.27. 및 12.20.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1,890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30) 2023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국회 본회의 의결(2.27.) 및 공포(3.14.)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과 별개로 시행일을 따로 규정함

※ 단,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
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495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2조 3,558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연평균 1,201억원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1,044억원 조세
수입 감소가 예상

[표 28] 2023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위원장, 2023.2.27.)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6,006	-1,201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218	-1,044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4,736	-947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050	-610
	기타 ¹⁾	-9,918	-1,984
	소계	-28,928 ²⁾	-5,786 ²⁾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위원장, 2023.12.20.)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적용기한 연장	-117,792	-23,558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2,738	-54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2,548	-510
	기타 ³⁾	-7,446	-1,489
	소계	-130,524	-26,105
합 계		-159,452 (-7,474)	-31,890 (-1,495)

주: 1)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 세수효과 중 202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효과는 제외
3)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등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세외수입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국유림 대부료 체납가산금의 연체료율 조정,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등 3건
 - 국유림 대부료 체납처분 변경: 국유림 대부료를 체납하는 경우 부과·징수하는 체납가산금을 연체료로 변경하고, 산식 조정
 - (개정전) 체납가산금 = 가산금(대부료의 3%) + 중가산금(1일당 가산금의 10만분의 22)
 - (개정후) 연체료 = 대부료 × 체납일수 × 이자율(1일당 10만분의 16)
 -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폐지: 수출입물품 검사시간 등에 비례하여 징수하였던 검사수수료 폐지
 - 검사수수료: 기본수수료(시간당 2천원) + 실비상당액(세관과 검사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12.8.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억원, 「관세법」(2023.12.21. 의결)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0.2억원의 국세외수입 감소가 예상

[표 29] 2023년 개정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홍문표 의원 등, 2023.12.8.)	국유림 대부료 체납처분 변경	-5	-1
「관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3.12.21.)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폐지	-1	-0.2
「상표법」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장, 2023.10.6.)	상표권 소멸시 상표등록료 일부 반환	-0.05	-0.01
합 계		-5	-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요인의 수입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조세수입 관련 재정수반요인 160개는 과세체제로 구분한 세부유형별로 세액공제·감면 130개, 과세대상 13개, 세율 7개, 기타 6개, 과세표준 4개 등으로 나타남
- 추계가 가능한 국세외수입 관련 재정수반요인 3개는 세부유형별로 적용대상 1개, 요율 1개, 기타 1개 등으로 나타남

[표 30] 2023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단위: 건, 개)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조세수입	과세대상	9	6	46	13
	과세표준	7	3	11	4
	세율	6	4	12	7
	세액공제·감면	14	9	175	130
	기타	14	5	49	6
	소계	26 ¹⁾	19 ¹⁾	293	160
국세외수입	적용대상	6	1	8	1
	요율	5	1	6	1
	감면	10	0	12	0
	기타	11	1	11	1
	소계	31 ¹⁾	3 ¹⁾	37	3
합 계		54 ²⁾	21 ²⁾	330	163

주: 1) 조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의 법률이 과세체제로 중복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개별 유형별로 분류된 법률 건수와 합계 건수가 일치하지 않음

2) 조세수입과 국세외수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법률(「관세법」 등)이 존재하여 조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의 재정수반법률 개수의 합과 전체 재정수반법률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ox2]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구분

□ (조세수입) 조세수입은 과세체계상 어느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재정수반요인 유형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감면, 기타 등으로 구분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비과세 요건 변동, 과세 신고대상 요건 변동 등을 포함
-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의 소득 등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소득공제·감면 요건 변동, 법인의 익금 및 손금산입 변동 등을 포함
- 세율: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한 적용세율 변경, 세율의 인상·인하, 중과세율의 적용 및 적용배제 등을 포함
- 세액공제·감면: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세액공제·감면 요건 변동, 공제·감면을 변동, 공제·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
- 기타: 기타 납부기한 등 세무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이나, 과세체계상 구분이 어려운 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등을 포함

□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재정수반요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 적용대상, 요율, 감면, 기타 등으로 구분

- 적용대상: 부담금 및 과태료, 가산금, 벌칙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축소하는 등의 개정사항 포함
- 요율: 부담금 등의 한도나 요율 등을 상향·하향하는 등의 개정사항 포함
-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대상 및 요건, 감면율 등에 대한 개정사항 포함
-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 등의 근거조항 신설 및 정비 등을 포함

- 수입유형별·재정수반요인별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세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조세수입 세부유형별 세수효과(절댓값)는 세액공제·감면(7조 6,862억원), 과세대상(6조 3,243억원), 세율(1조 863억원) 순

[표 31] 2023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단위: 개, 억원)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조세수입	과세대상	13 (11)	316,216 (849)	63,243 (170)
	과세표준	4	3,719	744
	세율	7 (3)	-54,314 (-23,528)	-10,863 (-4,706)
	세액공제·감면	130 (22)	-384,310 (-60,138)	-76,862 (-12,028)
	기타	6	-30,705	-6,141
	소계	160 (46)	-149,394 (-109,803)	-29,879 (-21,961)
국세외수입	적용대상	1	-1	-0.2
	요율	1	-5	-1
	기타	1	-0.05	-0.01
	소계	3	-6	-1
합 계		163 (49)	-149,400 (-109,809)	-29,880 (-21,962)

주: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조세수입

(가) 과세대상

□ (유형 개요) 과세대상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의 조정 등을 통한 과세대상의 확대 및 축소가 있음

- 2023년 가결된 과세대상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이상 세수 감소 요인),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설(이상 세수증가 요인)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의 과세대상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3,243억원의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70억원의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

[표 32] 2023년 개정 과세대상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249	-450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	-648	-130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315,376	63,075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4,033	807
기타 ¹⁾	-296	-59
합 계	316,216 (849)	63,243 (170)

주: 1)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대상 확대 등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과세표준

- (유형 개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소득공제·감면의 감면요건 및 감면율 조정, 법인소득 산정시 영향을 미치는 익금·손금의 조정, 이월결손금 조정 등이 있음
 - 2023년 가결된 과세표준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세수감소 요인),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세수증가 요인)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의 과세표준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44억원의 조세수입 증가가 예상

[표 33] 2023년 개정 과세표준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5,286	1,057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790	-158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744	-149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33	-7
합 계	3,719	744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세율

□ (유형 개요) 세율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한 적용세율 변경, 세율의 인상 및 인하, 영세율 적용, 세율 계산 방식 변경 등이 있음

- 2023년 가결된 세율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세수입의 세율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863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706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표 34] 2023년 개정 세율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15,347	-3,069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13,857	-2,771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713	-2,543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9,900	-1,980
기타 ¹⁾	-2,497	-499
합 계	-54,314 (-23,528)	-10,863 (-4,706)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등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세액공제·감면

□ (유형 개요) 세액공제·감면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용요건 조정,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인상 및 인하, 공제한도 변경 등이 있음

- 2023년 가결된 세액공제·감면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적용기한 연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농림어업용 석유류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의 과세표준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조 6,282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2,028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표 35] 2023년 개정 세액공제·감면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적용기한 연장	-117,792	-23,55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1,631	-8,326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1,068	-8,214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38,122	-7,624
기타 ¹⁾	-145,697	-29,140
합 계	-384,310 (-60,138)	-76,862 (-12,028)

주: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1. ()안은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기타 조세수입 유형

□ (유형 개요) 기타 국세수입 유형의 재정수반요인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요건 및 지급액 조정,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관련 기한 조정, 과세유예 등이 있음

○ 2023년 가결된 기타 유형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의 기타 유형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141억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

[표 36] 2023년 개정 기타 조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6,972	-5,394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3,528	-706
기타 ¹⁾	-205	-41
합 계	-30,705	-6,141

주: 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시 지급금액 인상 등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세외수입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3년 가결된 국세외수입의 유형관련 재정수반요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부담금 및 과태료, 가산금, 벌칙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축소하는 적용대상 관련 재정수반요인은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폐지
- 부담금 등의 한도나 요율 등을 상향·하향하는 요율 관련 재정수반요인은 국유림 대부료 체납가산금의 연체료율 조정
- 이 외 기타 유형 관련 재정수반요인은 상표권 소멸시 상표등록료 일부 반환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세외수입 관련 유형별 수입감소 효과는 요율, 적용대상, 기타 유형 순으로 집계

[표 37] 2023년 개정 국세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유형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적용대상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폐지	-1	-0.2
요율	국유림 대부료 체납처분 변경	-5	-1
기타	상표권 소멸시 상표등록료 일부 반환	-0.05	-0.01
합 계		-5	-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2023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지출법률은 244건(재정수반요인은 598개)으로서 이 중 추계가 가능한 166건 법률(재정수반요인 282개)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³¹⁾ 11조 3,40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동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른 지출 변동 규모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에 따른 지출효과를 포함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추계가 가능한 166건 법률의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제안자·위원회·재정주체별로 구분하여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서술
- (제안자별)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금액은 위원회 제안³²⁾, 의원 발의, 정부 제출 순
 - 위원회가 제안한 지출법률의 181개 재정수반요인(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 연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1조 446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³³⁾ 효과를 제외하면 위원회 제안 지출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29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31) 이하 연평균 값은 법률 제·개정에 따라 2024~2028년까지 예상되는 지출 변동의 총액을 5년으로 나눈 값으로, 예를 들어, 법률이 2025년 이후 시행되거나 법률의 효력이 2027년 이전에 종료되어 지출 변동이 1~4년간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32) 단, 위원회에서 제안된 대안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의원 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 등 원안을 폐기하고 대신 원안의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제출된 법안임

33)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

- 의원이 발의한 지출법률의 92개 재정수반요인(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666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의원 발의 지출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532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정부가 제출한 지출법률의 9개 재정수반요인(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해양수산 연구비 지원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88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표 38]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단위: 개, 억원, %)

제안자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의원	92 (90)	13,329 (12,661)	2,666 (2,532)	2.4
위원회	181 (174)	552,232 (31,469)	110,446 (6,294)	97.4
정부	9	1,442	288	0.3
합 계	282 (273)	567,003 (45,573)	113,401 (9,115)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금액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순
- 다만,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순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의 30개 재정수반요인(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 연장,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조 5,78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117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의 32개 재정수반요인(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69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66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의 78개 재정수반요인(수산물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0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571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그 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으로 연평균 824억원의 지출 증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으로 연평균 548억원의 지출 증가 등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라 372억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라 547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39]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단위: 개, 억원, %)

위원회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6	283	57	0.05
정무위원회	23	1,257	251	0.22
기획재정위원회	3	192	38	0.03
교육위원회	2	31	6	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3	492	98	0.09
외교통일위원회	6	109	22	0.02
국방위원회	7	616	123	0.11
행정안전위원회	31 (30)	1,323 (793)	265 (159)	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	440	88	0.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8 (77)	8,017 (7,857)	1,603 (1,571)	1.4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3 (20)	4,120 (1,860)	824 (372)	0.73
보건복지위원회	30 (28)	528,925 (10,584)	105,785 (2,117)	93.28
환경노동위원회	15 (14)	2,739 (2,737)	548 (547)	0.48
국토교통위원회	32 (31)	18,457 (18,320)	3,691 (3,664)	3.26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0	0	0	0.00
합 계	282 (273)	567,003 (45,573)	113,401 (9,115)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가 재정주체인 지출법률의 263개 재정수반요인(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 연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11조 2,487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국가가 재정주체인 지출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21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주체인 지출법률의 39개 재정수반요인(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필수예방접종 등)으로 인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914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주체인 지출법률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0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0]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단위: 개, 억원, %)

재정주체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¹⁾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국가	263 (254)	562,435 (41,074)	112,487 (8,215)	99.2
지방자치단체	39 (38)	4,568 (4,499)	914 (900)	0.8
합 계	282 (273)	567,003 (45,573)	113,401 (9,115)	100.0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20개 포함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0조 3,66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3.5.25. 의결, 2023.6.13. 시행)에 따른 일반회계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8조 8,45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5.25. 의결, 2023.6.13.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조 5,218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표 41]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단위: 개, 억원, %)

지출성격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의무지출	8	519,018	103,804	91.5
-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효과	2	518,341	103,668	91.4
· 일반회계 (「국민건강보험법」)	1	442,253	88,451	78.0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1	76,088	15,218	13.4
- 그 외 지출 변동 효과	6	677	135	0.1
재량지출	274	47,984	9,597	8.5
합 계	282	567,003	113,401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의 연장은 의무지출 증가 효과로 이에 따른 지출 증가 효과의 크기는 점검대상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른 지출 변동의 91.4%를 차지

□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3.4.13. 의결, 2023.8.26. 시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2023.10.6. 의결, 2024.4.25. 시행), 「도로법」 개정(2023.12.8. 의결, 2024.7.10. 시행)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26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통한 신공항 추진과 미끄럼 도로 구간 등에 배수 및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통한 도로 정비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 보조·용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및 협의기구를 설치·운영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
- (도로법)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

[표 42] 2023년 제·개정 신공항 건설 및 도로 정비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023.4.13.)	13,678	2,73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2023.10.6.)	1,802	360
도로법(2023.12.8.)	843	169
합 계	16,323	3,26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출생아와 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023.12.8. 의결, 2023.12.26.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2023.12.8. 의결, 2024.7.3.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2.27. 의결, 2023.9.29. 시행)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87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과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기준 완화를 통한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100만 원을 추가 지급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

[표 43] 2023년 개정 영유아 지원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23.12.8.)	4,816	96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23.12.8.)	2,016	4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2.27.)	2,537	507
합 계	9,369	1,87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 2023년 가결된 지출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지출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정부의 기능에 따라 16대 분야³⁴⁾로 구분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야 구분에 근거하여 지출분야별 재정소요를 점검
- 추계가 가능한 지출법률 166건을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이 37건, 일반·지방행정이 25건, 사회복지 21건, 교통 및 물류 16건, 보건 14건 순으로 나타남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282개는 지출분야별로 농림수산 73개, 일반·지방행정 44개, 교통 및 물류 26개, 사회복지 25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개 순으로 나타남

34) 16대 지출분야에는 '예비비'도 별도 분야로 포함됨

[표 44]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분야별

(단위: 건, 개)

지출분야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¹⁾	점검대상 ²⁾	전체	점검대상
일반·지방행정	34	25	84	44
공공질서 및 안전	19	12	33	17
통일·외교	4	3	10	6
국방	8	6	12	6
교육	2	2	13	2
문화 및 관광	14	8	28	12
환경	10	7	15	9
사회복지	31	21	37	25
보건	24	14	31	17
농림수산	49	37	119	7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9	11	82	24
교통 및 물류	19	16	64	26
통신	4	2	26	9
국토 및 지역개발	8	3	19	9
과학기술	4	2	25	3
합 계	244	166	598	282

주: 1) 복수의 지출분야에 속하는 법률 5건 포함

2) 복수의 지출분야에 속하는 점검대상 법률 3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지출분야별로 살펴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금액은 보건,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순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금액은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농림수산, 보건, 환경 순

[표 45]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단위: 개, 억원, %)

지출분야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일반·지방행정	44 (43)	2,238 (1,708)	448 (342)	0.4
공공질서 및 안전	17	878	176	0.2
통일·외교	6	109	22	0.02
국방	6	612	122	0.1
교육	2	31	6	0.01
문화 및 관광	12	396	79	0.1
환경	9 (8)	1,999 (1,997)	400 (399)	0.4
사회복지	25	8,896	1,779	1.6
보건	17 (15)	521,596 (3,255)	104,319 (651)	92.0
농림수산	73 (72)	8,011 (7,851)	1,602 (1,570)	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 (21)	4,121 (1,861)	824 (372)	0.7
교통 및 물류	26	17,135	3,427	3.0
통신	9	436	87	0.1
국토 및 지역개발	9 (8)	537 (400)	107 (80)	0.1
과학기술	3	6	1	0.001
합 계	282 (273)	567,003 (45,573)	113,401 (9,115)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하에서는 2024~2028년 연평균 지출변동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지출분야인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교통 및 물류를 중심으로 주요 재정수반요인을 분석

가. 사회복지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100만원 추가 지급,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확대 등
 -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100만원 추가 지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023.12.8. 의결, 2023.12.26. 시행)으로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 발생
 -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2023.12.8. 의결, 2024.7.3. 시행)으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확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12.8. 의결, 2024.4.27. 시행)으로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율을 현행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로 확대³⁵⁾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35) 이때 국가지원율이 확대되는 경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재정소요점검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779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6] 2023년 제·개정 사회복지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23.12.8.)	4,816	96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23.12.8.)	2,016	40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3.12.8.)	790	158
기타(18개 법률)	1,274	255
합 계	8,896	1,779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건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보건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실시 등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일반회계)의 유효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3.5.25. 의결, 2023.6.13.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의 유효기간 연장: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5.25. 의결, 2023.6.13.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2.27. 의결, 2023.9.29. 시행)으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조 4,319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7] 2023년 개정 보건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국민건강보험법(2023.5.25.)	442,253	88,451
국민건강증진법(2023.5.25.)	76,088	15,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2.27.)	2,537	507
기타(11개 법률)	719	144
합 계	521,596	104,319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농림수산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농림수산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지정 등,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운영 등

- 수산물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6. 의결, 2024.4.25.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위판장개설자에게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수산물 위생안전 물류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6.30. 의결, 2024.7.26. 시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지원을 통해 장기임대팜, 스마트팜 전환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2023.10.6. 의결, 2024.10.25. 시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운영: 「국립해양박물관법」 개정(2023.5.25. 의결, 2024.1.1. 시행)³⁶⁾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³⁷⁾을 설립 및 운영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재정소요점검 결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립해양박물관법」 개정 등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02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36) 법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37)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

[표 48] 2023년 제·개정 농림수산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10.6.)	1,410	28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6.30.)	1,372	27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23.10.6.)	1,070	214
국립해양박물관법(2023.5.25.)	652	130
기타(33개 법률)	3,507	701
합 계	8,011	1,602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교통 및 물류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미끄럼 구간 등에 대한 배수성·저소음 포장 등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3.4.13. 의결, 2023.8.26. 시행)으로 국가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고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및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2023.10.6. 의결, 2024.4.25. 시행)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미끄럼 구간 등에 대한 배수성·저소음포장: 「도로법」 개정(2023.12.8. 의결, 2024.7.10. 시행)으로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재정소요점검 결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도로법」 개정 등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427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9] 2023년 제·개정 교통 및 물류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023.4.13.)	13,678	2,73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2023.10.6.)	1,802	360
도로법(2023.12.8.)	843	169
기타(13개 법률)	812	126
합 계	17,135	3,42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 2023년 가결된 재정수반요인의 지출성격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인 ‘재량지출’로 구분
 - 정부는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포함³⁸⁾
 - 본 보고서에서 의무지출 사업은 정부의 2024년 예산 기준 사업과 동일하게 분류
- 추계가 가능한 지출법률 166건을 지출성격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이 8건(4.8%), 재량지출이 158건(95.2%)을 차지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282개는 지출성격별로 의무지출이 8개(2.8%), 재량지출이 274개(97.2%)로 나타남

[표 50]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성격별

(단위: 건, 개, %)

지출성격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의무지출 (구성비)	10 (4.1)	8 (4.8)	10 (1.7)	8 (2.8)
재량지출 (구성비)	234 (95.9)	158 (95.2)	588 (98.3)	274 (97.2)
합 계	244 (100.0)	166 (100.0)	598 (100.0)	282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8)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호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제4호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

□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지출성격별로 살펴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금액은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큼

-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재량지출 증가 금액이 의무지출보다 큼

[표 51] 2023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성격별

(단위: 개, 억원, %)

지출성격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의무지출	8 (5)	519,018 (147)	103,804 (29)	91.5
재량지출	274 (268)	47,984 (45,425)	9,597 (9,085)	8.5
합 계	282 (273)	567,003 (45,573)	113,401 (9,115)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28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안은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의무지출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의무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연장 등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5.25. 의결, 2023.6.13.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³⁹⁾ 및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6619호) 부칙 제2항⁴⁰⁾에 따라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 2023년 개정사항은 기존 유효기간(2022년 12월 31일까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사업에 10조 2,636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 1조 9,022억원 편성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연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6.21. 의결, 2023.7.4. 시행)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⁴¹⁾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 지원⁴²⁾
 - 2023년 개정사항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대한 지원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에 따르면, 자율통합 지자체(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에 94억원 편성

39)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40)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법률 제6619호, 2002. 1. 19.>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4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6.9. 제정, 2023.7.10. 시행)으로 통합됨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조 3,804억원의 의무지출 증가 예상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2024년 국고지원금은 정부 예산을 준용하고 이후는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및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에 국고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연평균 10조 3,668억원 증가 예상
 - 국고지원율은 일반회계의 경우 11.4%(2020~2022년 평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65%⁴³⁾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연장: 통합 직전연도인 2013년 청주시·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3,117억 7,900만원)에 2025년에는 100분의 6을, 2026년에는 100분의 5를, 2027년에는 100분의 4를, 2028년에는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 연평균 106억원 증가 예상

[표 52] 2023년 개정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국민건강보험법(2023.5.25.)	442,253	88,451
국민건강증진법(2023.5.25.)	76,088	15,21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3.6.21.)	530	106
기타(5개 법률)	147	29
합 계	519,018	103,80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3)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은 부담금의 65%를 기준으로 산정

나. 재량지출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재량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100만원 추가 지급,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실시,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등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3.4.13. 의결, 2023.8.26. 시행)으로 국가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을 보조 및 용자할 수 있고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및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겸용공항으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100만원 추가 지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023.12.8. 의결, 2023.12.26. 시행)으로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⁴⁴⁾
 - 2023년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⁴⁵⁾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2.27. 의결, 2023.9.29. 시행)으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45)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금액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제3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9호, 2024.3.26., 일부개정)은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제1조의2제1항제2호)

- 국가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예방접종의 보건소 백신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등 지급
- 2023년 개정사항은 필수예방접종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2023.12.8. 의결, 2024.7.3. 시행)으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원⁴⁶⁾
 - 2023년 개정사항은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 기준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2023.10.6. 의결, 2024.4.25. 시행)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2024년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자금⁴⁷⁾은 정부 출연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수산물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6. 의결, 2024.4.25.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개설자에게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수산물 위생안전 물류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4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47)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 위판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과 및 산지 수산물 위생안전 물류 지원을 위한 자동선별기 및 저온차량 지원 계획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6.30. 의결, 2024.7.26. 시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지원을 통해 장기임대팜, 스마트팜 전환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검정체계 개발 등도 실시할 계획
 -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2023.10.6. 의결, 2024.10.25. 시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고령농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시스템 홍보도 병행할 계획
 - 그 밖에 재량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다음과 같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3.30. 의결, 2023.10.19. 시행)에 따른 법의 유효기간 삭제, 「하천법」 개정(2023.7.27. 의결, 2023.10.19. 시행)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 근거 신설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597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결과(2023년 8월)과 국토교통부의 중기재정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연평균 2,736억원 증가 예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100만원 추가 지급: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를 추계한 후 이에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액 1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결과 연평균 963억원 증가 예상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실시: 0세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하고,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 따른 백신 종류, 접종량, 비용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연평균 507억원 증가 예상
-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장애미등록 아동 중 6세 이상 9세 미만 2.1만명에게 20만원씩 12개월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연평균 403억원 증가 예상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사 공공기관 사례를 참조하고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사업에 반영된 공단 설립 준비 예산내역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 연평균 360억원 증가 예상
- 수산물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및 산지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연평균 282억원 증가 예상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검정 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 연평균 274억원 증가 예상
-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취약계층 교육·홍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산출내역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 연평균 214억원 증가 예상

[표 53] 2023년 제·개정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023.4.13.)	13,678	2,73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23.12.8.)	4,816	9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2.27.)	2,537	50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23.12.8.)	2,016	40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023.3.30.)	2,009	402
하천법(2023.7.27.)	1,894	379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2023.10.6.)	1,802	36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10.6.)	1,410	28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6.30.)	1,372	27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23.10.6.)	1,070	214
기타(148개 법률)	15,380	3,076
합 계	47,984	9,59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 결 론

- (점검 결과)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추계가 가능한 185건의 445개 재정수반요인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
 - 점검대상 수입법률은 21건으로 163개 재정수반요인
 - 점검대상 지출법률은 166건으로 282개 재정수반요인
 -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9,880억원의 수입 감소와 11조 3,40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918억원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조 3,668억원으로 예상됨

[표 54]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소요

구분	수입	지출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제외	2조 1,962억원 감소	9,115억원 증가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포함	2조 9,880억원 감소	11조 3,401억원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

평균 2조 1,962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의 상쇄,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 효과의 높은 비중, 출산·양육, 첨단기술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는 연평균 7,918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조세지출 등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연평균 7조 993억원)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연평균 6조 3,075억원)에 상쇄된 결과
 - 2023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의 의결이 2월과 12월에 각각 두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등 예년에 비해 지방세 관련 수입법률로 인한 세수효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2023년 개정 조세관련 법률은 출산·자녀양육과 첨단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9,11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공항 건설 추진 및 도로 정비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출생아와 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으로 연평균 10조 3,668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 ※ 일반회계 지원: 연평균 8조 8,451억원 지출 증가 예상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연평균 1조 5,21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2023년 제·개정 신공항 건설 및 도로 정비 관련 지출법률에 따라 연평균 3,26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2023년 개정 출생아·장애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지원 관련 지출법률에 따라 연평균 1,87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재정소요점검은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법의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정소요 발생의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에 따른 추계상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법령상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나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세입법률의 경우 대체로 미래의 지출 또는 수입이 예상 가능하여 재정추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임
 - 반면에 재량지출,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지출,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인 수입의 경우에는 개연성이 있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추계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부록] 2023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표

□ 2023년 재정수반법률의 재정변화분이 연평균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요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표를 제시

〈수입법률〉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2120249	「지방세특례제한법」	-28,928	-5,786
	-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등	(-6,017)	(-1,203)
2120250	「지방세법」	-24,027	-4,805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		
2120969	「조세특례제한법」	-40,416	-8,083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2124153	「법인세법」	5,286	1,057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2124155	「주세법」	-1,362	-232
	- 생맥주 주세율 한시경감 적용기한 연장	(0)	(0)
2124158	「교육세법」	153	31
	-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대상 확대 등		
2125696	「소득세법」	-3,096	-619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21256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28	-706
	-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2125698	「부가가치세법」	-28,803	-5,761
	-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0)	(0)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2125699	「농어촌특별세법」	315,376	63,075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0)	(0)
2125700	「조세특례제한법」	-195,523	-39,105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6,557)	(-7,311)
2125703	「관세법」	-61	-12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등		
2125990	「지방세법」	-13,857	-2,771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0)	(0)
2125999	「지방세특례제한법」	-130,524	-26,105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1,457)	(-291)

주: ()안은 농어촌특별세 및 조세지출 등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출법률〉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2111603	「철도사업법」	82	16
	- 민자관리철도지원센터 지원		
21136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10	282
	-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2116710	「소방기본법」	163	33
	- 소방정보통신망 이중화		
2116928	「구강보건법」	85	17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2116976	「국립해양박물관법」	652	130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운영		
211736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70	34
	-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117389	「건축물관리법」	137	27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11740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85	17
	- 사할린동포 동반가족 범위 확대 및 실태조사		
2117755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66	13
	- 해양수산물 연구 장비·시설 전문기관 지정·지원 등		
211799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116	23
	-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 사업		
2118150	「한식진흥법」	126	25
	- K-미식벨트 지원 및 자문단 운영 등		
211819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72	274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211829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530	106
	-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2118956	「제품안전기본법」	279	56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운영비용 지원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211900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25	45
	- 탄소흡수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2119046	「출입국관리법」	62	12
	-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 발급 시스템개발·장비 도입		
2119073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0	20
	-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및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구성·운영		
211971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1,802	360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212004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3	25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212007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280	56
	-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원		
2120089	「개인정보 보호법」	784	157
	-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구축 및 전송요구 등		
2120092	「청년기본법」	129	26
	-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21202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37	507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필수예방접종		
2120924	「도로교통법」	196	39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		
212092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09	402
	- 법률 유효기간 삭제		
212094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143	29
	-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등		
2120995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13	63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등		
2121130	「어장관리법」	237	47
	- 어장환경평가 대상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의 전문기관 위탁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212133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13,678	2,736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공사		
21216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0	20
	-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212208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07	21
	-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12210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64	33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등		
2122111	「국민건강보험법」	442,253	88,451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일반회계) 유효기간 연장		
2122117	「국민건강증진법」	76,088	15,218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유효기간 연장		
212226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5	41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설치 등		
212228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50	10
	- 농어촌유학 지원 및 사회협약위원회 설치·운영 등		
212263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790	158
	-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212277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1	10
	- 잠정조치 결정 스톱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21227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7	33
	- 스톱킹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		
2122790	「공무원연금법」	110	22
	- 지방의회의원 선출 퇴직공무원 퇴직연금 일부 지급		
212298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8	48
	-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조치		
212329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81	76
	-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 완화 등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21233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	40
	- 청소년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실시		
2123313	「관광진흥법」	172	34
	-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 육성		
212348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7	11
	- 전세버스 휠체어 장착기구 설치비 보조		
212349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0	22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실태조사		
2123512	「하천법」	1,894	379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		
2123546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455	91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2123982	「자동차관리법」	85	17
	- 이륜자동차 검사		
21244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1	46
	- 자생식물 공급센터 운영 및 인증체계 구축		
212446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333	67
	- 국가숲길 운영·관리 등		
212446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070	214
	-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212447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0	32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212448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24	85
	- 양자산업 관련 상용화·표준화 및 창업·기업 육성 등		
212460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0	58
	-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212461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3	71
	- 고용안정 지원 방안 컨설팅 및 수요조사·분석 등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212462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263	53
	- 상담기관 지정·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2124629	「도로교통법」	69	14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 실시		
212513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816	963
	-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2125799	「병역법」	108	22
	-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21258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25	25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1258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14	183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21258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81	16
	- 동료지원센터 설치·운영		
212583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5	39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2125838	「도로법」	843	169
	- 미끄럼 구간 등에 대한 배수성·저소음포장		
2125851	「어선안전조업법」	185	37
	- 어선원안전감독관 운용 등		
2125856	「농촌진흥법」	80	16
	- 농업인 등 관련 단체 지원 등		
21258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6	403
	- 지원 대상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기준 상향 조정		
212586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66	13
	- 국가회귀·특산식물보전기관 지원		
21259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2	1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소기업 지원 등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212598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10	62
	- 법률 유효기간 삭제 및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2125991	「문화재보호법」	100	20
	- 장애인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 지원		
2125998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443	89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지원 등		
212600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	10
	-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운영		
21260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274	55
	- 항만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2126011	「식물방역법」	105	21
	- 병해충예찰조사기관 및 병해충정밀검사기관 지정		
212609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86	57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일	2024년 6월 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주시
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SN 3058-2032

© 국회예산정책처, 2024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2082-01

ISSN 3058-2032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